
Policy and Law Report _Vol.17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22.~3.28.) -

March 29, 2023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등 심의·확정 -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정부는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하에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함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인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해외 NPE(비실시 특허전문기업, 일명 ‘특허괴물’) 특허분쟁 지원대책(안)」,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이 심의되었고,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이 보고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범부처 4대 추진전략, 6대 핵심정책방향 제시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여 핵심 IP 확보 - IP투자펀드 연 2,500억원 규모 조성 등 IP금융 ‘27년까지 23조원 규모 확대 - K팝,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고품질 K-콘텐츠를 국가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② (해외 NPE (비실시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 해외 NPE 대응을 통한 우리기업 보호 및 지원 - 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집중 지원, 해외 NPE의 특허매입 등 활동 동향 제공, 소송 특허의 특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분쟁위험 조기경보 등 종합대책 마련 ③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기업 성장 지원 - 지식재산 기반 R&D 범부처 확대,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IP투자 공동펀드 조성 등 범부처 지원 추진 ④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및 실험실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IP 지침 제시 - 출연연의 연구사업화를 발명·창업·성장단계로 나누고 특허권 양도의 활성화, 창업 후 직무발명 등 주요 이슈·쟁점에 대한 실무지침 제공	2023-03-23
산업통상 자원부	•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30년까지 연료전지 수출물량 누적 1GW, 수출액 누적 30억불 달성 등 연료전지를 미래 에너지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26년까지 수소, 해상풍력, CCUS 등 5대 에너지 新산업 성장동력화 (’22.12월, 산업부 업무보고)	2023-03-23

부처	내용	일시								
	연료전지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출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위주에서 중동·호주·동남아·미국·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료전지 주기기에서 핵심 소재·부품 등까지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낼 필요가 있음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 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확대, ▲주기기 판매와 설계·건설·운전·SOC 등을 연계한 수출패키지화, ▲기술, 인력양성, 마케팅 협력을 통한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등 연료전지산업 초격차 유지 및 글로벌시장 선점을 모색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업계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산업기반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등 3대 전략, 7대 과제를 담은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연료전지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 > <table><tr><td>3대 전략</td><td>국내 산업기반 고도화</td><td>글로벌 경쟁력 제고</td><td>맞춤형 해외진출 지원</td></tr><tr><td>7대 추진과제</td><td>① 신규시장 창출 ② 클러스터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 ③ 금융·세제 지원 확대</td><td>④ 고효율·고내구성 핵심기술 확보 ⑤ 글로벌 공급망 강화</td><td>⑥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⑦ 무역금융 확대 및 수출 지원 기반 강화</td></tr></table> ① 산업생태계 유지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정책시장 외에 자가발전 수요 기반 신규 시장 창출 - 연료전지를 주전원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센터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수도권 산단 신설 시 분산형 연료전지 설치 유도 - 야전용 이동식 발전기 개발 등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규 수요처 발굴 추진 ② 포항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사업('24~'28년, 총사업비 1,890억원)*을 통해 기업 집적화단지, 소재·부품 성능평가센터, 국산화 실증시험센터 등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여 산업 고도화 기반 마련 * 현재 예타 진행 중으로, '23.6월 예타 통과시 '24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추진 - 금년 하반기 진행 예정인 수소 특화단지 신규 지정시 연료전지 중심 특화단지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③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7대 전략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개발 투자시 연간 5천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우대 등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주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세제 혜택 강화 추진 * 산업은행 4,100억원, 기업은행 200억원, 신용보증기금 700억원 등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외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3대 전략	국내 산업기반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7대 추진과제	① 신규시장 창출 ② 클러스터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 ③ 금융·세제 지원 확대	④ 고효율·고내구성 핵심기술 확보 ⑤ 글로벌 공급망 강화	⑥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⑦ 무역금융 확대 및 수출 지원 기반 강화	
3대 전략	국내 산업기반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7대 추진과제	① 신규시장 창출 ② 클러스터 조성 및 특화단지 지정 ③ 금융·세제 지원 확대	④ 고효율·고내구성 핵심기술 확보 ⑤ 글로벌 공급망 강화	⑥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⑦ 무역금융 확대 및 수출 지원 기반 강화							

부처	내용	일시
	④ 효율·대형화, 내구도 향상, 불량률 저감 등 세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화한 「수소 R&D 로드맵」을 금년 6월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 -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 중 산업적 중요성이 큰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여 국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기술보호 강화 ⑤ 귀금속 촉매, 고분자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선정하여 수입선 다변화, 국내 가공·양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 * 수소 분야 주요 부품·소재·원자재 및 핵심기술 분석 연구 (산업연구원, '23.4월~'24.3월) ⑥ 중동·호주·동남아·미국·유럽 등 업계의 지역별 맞춤 수출전략과 연계한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품목 다양화 등 수출의 질적 성장 도모 * 예시 : (중동/호주) 고위급 회담 계기 청정수소 발전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미국) 현지업체에 부품·보조기기 수출을 위한 규격 및 성능기준 확보 지원, (중국) 비관세 장벽 대응 및 고부가 핵심부품 수출을 위한 현지 인증 지원 등 ⑦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우대* 등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바이오 초청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연료전지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보험한도 1.5~2배 확대, 보험료 10~20% 할인 등 검토 중 ('23.2월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보건복지부	•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함 이는 지난 2월 28일(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담음 종합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정·협약함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 ▲개방형 혁신,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 집중 지원 ②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 완료,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 추가 조성 ③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 설치 ④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⑤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 개선	2023-03-24

부처	내용		일시
	비전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목표	▶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블록버스터 신약 : ('22) 0개 → ('27) 2개(누적) → ('30) 3개(누적) ▶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 육성 글로벌 50대 제약사 : ('22) 0개 → ('27) 3개 → ('30) 5개 ▶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의약품 수출액 : ('22) 81억 달러* → ('27) 160억 달러 * '22년 수출액('22년부터 제외진단기기가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분류) ▶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약바이오 일자리 : ('21) 12만 개(누적) → ('27) 15만 개(누적) → ('30) ▶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 : ('21) 6위 → ('27) 3위	
			
	주요과제	4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
		R&D 강화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② 보건안보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R&D 투자 ③ AI·빅데이터 등 신약개발의 디지털 전환 촉진
		수출지원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① 제약바이오분야 금융지원 강화 및 창업 지원 ②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 수출산업화
		인력 양성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①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② 제약바이오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
		제도/인프라 개선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①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 지원 ②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③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 강화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농림축산 식품부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3.23. 시행) 제조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 중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을 삭제하여 신규 사료업체에게 부담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며, 여러 수입업자가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사료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만 정밀검정 대상이 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32조제2항 등)	2023-03-23
산업통상 자원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9.29. 시행 예정)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호, 제3조의3 신설, 제4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 등)	2023-03-28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3.28. 시행.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2023-03-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5조제2항제13호,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3.3.28. 시행)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제작 중단 및 대체 자동차의 우선 출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경유자동차 제한 규정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운행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제28조의3 신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 단서조항 등)	2023-03-2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3.29. 시행 예정.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7호, 제9조의2, 제9조의4 삭제,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의3 신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2023-03-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3.9.29. 시행 예정.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37조제1항,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6제1항, 제7장의4(제68조의14부터 제68조의25까지) 신설 등)	2023-03-28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9.29. 시행 예정. 다만,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및 조정부의 설치근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사상 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 간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예외적으로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0조제2항제7호, 제27조제7항 삭제,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10까지 신설 등)	2023-03-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4.23. 시행예정. 다만, 제7조의2, 제19조제2항, 제35조의2, 별표 1,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안전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의2, 제19조제2항, 제35조의2제6호의2 신설 등)	2023-03-2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의무 내실화 및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대사업자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 (안 제35조제2항) ②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함 (안 제39조제2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3/22(수)~5/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	2023-03-22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및 제45조의6(2023.1.3. 개정)의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3.7.4. 시행)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규정 (안 제40조의5제1항) ② 분쟁조정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 소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근거 규정 (안 제40조제5항) ③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안 제40조의8)	2023-03-2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2023/3/24(금)~5/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통신분쟁조정팀)로 제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이의 문언상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광고 등과 관련한 금지 행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3/22(수)~5/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	2023-03-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하였는 바, 국내에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2항)	2023-03-2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을 말한다)의 규모가 각각 약 3배, 약 5배 증가하였음에도 예금 보험금의 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예금 보험금의 하한액을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32조제2항)	2023-03-2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	2023-03-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023-03-2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외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보완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점검 및 보완 업무의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 「<u>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u>」 일상 소비생활에서 할부거래는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접할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 할부이자율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나 결제방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임 현행법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부이자율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사별, 할부개월 수별로 할부이자율을 모두 파악하여 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결제 전에 할부이자율을 알기 어렵고, 결제 후에도 15~20%에 이르는 고이율의 할부이자율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이자율을 포함한 할부거래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3항 등)	2023-03-24
	• 「<u>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u>」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물론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해당 건은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라는 약관상 규정을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하여 앞으로도 경제 상황 급변시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함 이에 보험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보험회사가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023-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또한 보험업법 외에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 (안 제110조의4 신설)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아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특히, 미래이동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된 세제지원도 함께 논의중에 있음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에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 완성차 조립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장이나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친환경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완성차 조립공장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함 (안 제24조 및 제130조)	2023-03-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적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1제1항)	2023-03-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2023-03-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1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을 하거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 감염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이나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2제1항)	2023-03-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2인)」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10·2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의 동 특례에 따른 절감비용이 6억여원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24년으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2)	2023-03-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 내 산업진흥원 개별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1항)	2023-03-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사의 판매대리점이 악의적으로 발달장애인 등에게 불필요한 휴대폰이나 통신서비스를 중복하여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휴대폰 개통을 위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기존에 가입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외에 중복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등)	2023-03-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u>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2인)</u>」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며,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되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 ③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부류(部類)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를 인가하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판매자가 하는 도매는 직접 판매하거나, 출하자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도록 하고, 농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 (안 제12조)	2023-03-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⑥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7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운영자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운영자에 대해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및 제24조)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가 인가요건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취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의무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에너지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SMP상한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이로 인한 에너지 사용감소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하며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전기, 가스, 열의 특성별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9조의2·제9조의3 신설, 제14조제1항)	2023-03-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현행 법령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난 2000년 이후에는 물품의 부분, 화상 및 글자체도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최근 특정한 물품이나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모양과 무늬가 강조되는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이 기존의 제품디자인 이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주지하여,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의 대상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 그리고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권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실제적인 보호범위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재한 해당 물품으로만 한정됨 한편, 최근 디자인 트렌드는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 용도의 물품에 적용(One-source, Multi-use)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용도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각각 출원등록해야 하므로 출원인으로서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미처 출원등록하지 못한 물품에 제3자가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에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인 그래픽 심벌을 포함함 (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2호의3 신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그 정의를 구체화함 (안 제31조제1항) ③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안 제93조제2항 신설)	2023-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이 되고 있어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58조)	2023-03-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6인)」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 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함	2023-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제8호의2)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5인)」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 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또한, 자원순환사회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함 이에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2023-03-2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6인)」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2023-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 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둬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 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함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제7호나목)	
국토교통 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대에 육박하고, 전년 대비 68.4% 급증하는 등 전 국민적으로 전기차 사용 추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바,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율이 전년 대비 83.3% 급증하는 등 안전 상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이 불분명해지는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한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 등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2023-03-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안 제31조 제4항) ②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3조제4항)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3/30(목) 14:00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3/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8호 발간 - 미국의 재난지원 조정 및 온라인 공개법(안)	
	3/28(화) 15:00	제2회 최신 기술 이해 제고를 위한 강연 개최 - 대화하는 인공지능도 웅알이를 하던 시절이? - 강사 : 카카오 AI연구소 천영재 이사	국가전략 정보센터
	3/29(수)	「금주의 서평」 제621호 발간 -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3/30(목) 10:00	국회도서관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북한의 전략국가론	
예산정책처	3/31(금)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발간	
	3/31(금)	「2023 경제전망」 발간	
입법조사처	3/20(월)	「이슈와 논점」 발간 -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별첨1] 제404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3/27(월) 14: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법사위	3/27(월) 10:00	전체회의	- 고유법 의결, 현안질의(법무부), 타위법 심사
	3/28(화) 10:00	전체회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회
	3/29(수) 10:00	전체회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회
정무위	3/28(화) 10: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3/30(목) 10: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교육위	3/31(금) 10:00	전체회의	-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과방위	3/28(화) 10:00	전체회의	- 공청회 (방송 관련 법안 제정) - 공청회 (미래산업 및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제정)
문체위	3/29(수) 13:3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 공청회 (체육인공제회법안) - 공청회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자중기위	3/30(목) 10:00	전체회의	- 공청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환노위	3/30(목) 10:00	전체회의	- 공청회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법안)
국토위	3/28(화) 10:00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3/30(목) 09:3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여가위	3/29(수) 10:00	전체회의	- 공청회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연금개혁 특위	3/29(수) 14:00	전체회의	-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의 건
인구위기 특위	3/29(수) 10:00	전체회의	- 자문위 구성의 건 -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
	3/31(금) 10:30	전체회의	-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윤리특위	3/30(목) 11:00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7(월) 09:30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	윤창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8(화) 10:00	2023년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8(화) 10:00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8(화) 14:00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	의원회관 306호
3/28(화) 14:00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이용선·양이원영 의원실, 에너지전화포럼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8(화) 14:00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윤재옥 의원실,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9(수) 10:00	금융노동자 간담회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3/30(목) 10:00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김영식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켄싱턴 호텔 여의도 2F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7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3/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7호 발간 -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	
	3/22(수)	「Data & Law」 제2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3/23(목)	「현안, 외국에선?」 제56호 발간 - 일본 정부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예산정책처	3/20(월)	「예산정책연구」 제12권제1호 발간	
입법조사처	3/20(월)	「이슈와 논점」 발간 - 영국 하원 선거제도	
	3/20(월)	「외국 입법·정책 분석」 -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3/21(화)	「이슈와 논점」 발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0(월) 10:00	<u>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산업 국회 포럼</u>	이헌승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3/20(월) 14:00	<u>토큰(STO)·가상자산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u>	정우택 의원실, 블록미디어	의원회관 1세미나실
3/21(화) 10:00	<u>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u>	홍익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3/21(화) 14:00	<u>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u>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21(화) 14:00	<u>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u>	김홍걸·조정식·김한정, 박정, 김경만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3/21(화) 14:00	<u>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u>	황희·권철승·김병기, 김성원·이헌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3/24(금) 13:30	<u>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u>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